

- 전국학부모지원센터 ·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-

업무협력협약서

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부모교육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학부모교육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다.

제2조(협력 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호 적극 협력 한다.

1. 학부모교육 활성화 및 가정교육을 위한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
2. 학부모교육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
3.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기관 주요사업 홍보 협조
4.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

제3조(협의체 구성) 양 기관은 제2조에 규정한 협력업무의 수행과 본 협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공동추진 사업 지원) 양 기관은 공동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인프라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, 소요경비는 협의를 거쳐 정하되,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 소요경비를 부담한다.

제5조(연구자료, 시설, 장비 및 공간의 공동 활용) 양 기관은 연구 및 사업수행 상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양 기관의 연구자료, 시설, 장비,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인력교류) 양 기관은 상호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사업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, 상호 협의 하에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3월 14일

전국학부모지원센터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
대표

고은영

대표

마미경